

평창(대관령면)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439
--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5. .
제 안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(대관령면) 로컬푸드 직매장은 미래 지역먹거리 수요에 기초한 연중 안정적인 생산·공급·소비기반 확보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시기 확대, 유통단계 축소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서,
- 평창군에서 위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민간 위탁하고자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」 제4조, 제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평창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

- 평창(대관령면)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위탁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제1항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 제4조제1항

○ 필요성

- 농산물유통과 공유재산(평창(대관령면) 로컬푸드 직매장)에 대하여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직매장사업팀이 있고, 현재 직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을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가 관리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위탁내용: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전반 등
- 수탁기관: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
- 위탁면적: 부지면적 3,692m², 건축면적 396.28m², 연면적 656.06m²
(1층 396.28m², 2층 259.78m²)
- 위탁기간: 2025. 7. ~ 2030. 7.(5년)

라. 위탁시설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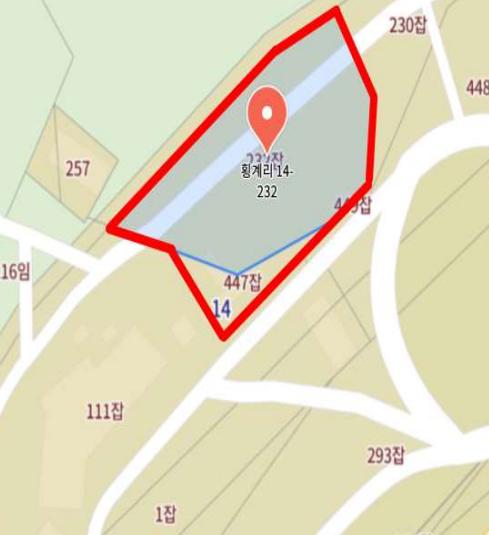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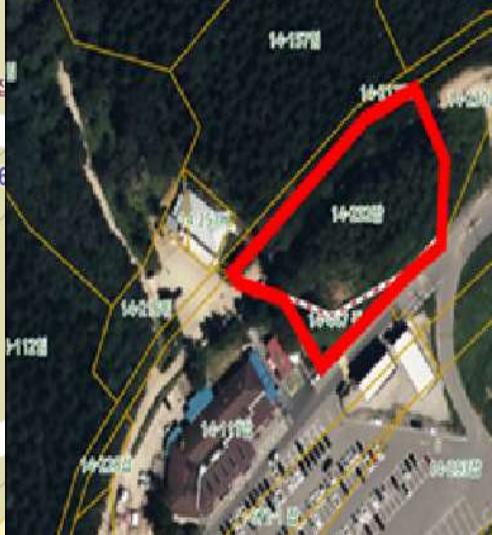
- 소재지: 대관령면 횡계리 14-232번지 외 1필지
- 시설규모: 지상2층 1동(건축면적 396.28m²)
- 평창(대관령면)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 현황

군	읍.면	리	번지	지목	면적(m ²)	비고
계					3,692	
평창군	대관령면	횡계리	14-232	잡	3,274	
			14-447	잡	418	

- 평창(대관령면) 로컬푸드 직매장 건물 현황

재산의 표시					비고
소재지	지번	구조	층	면적(m ²)	
계				656.06	
대관령면 횡계리	14-232	철근콘크리트	1층	396.28	
			2층	259.78	

○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지적도	위치도(위성사진)
	
현장사진	
	

마. 민간 위탁기간

- 2025. 7. ~ 2030. 7.(5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선정방식: 수의위탁
- 수의위탁 근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제2항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의제1항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해당없음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평창(대관령면) 로컬푸드 직매장은 미래 지역먹거리 수요에 기초한 연중 안정적인 생산·공급·소비기반 확보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시기 확대, 유통단계 축소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임
- 따라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·관리에 관리 책임을 일원화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,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며, 관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

자.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(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)

- 해당없음

차. 향후 추진일정

- 평창(대관령면) 로컬푸드 직매장 준공: 2025. 6.
-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(협약)체결: 2025. 7.
- 평창(대관령면)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및 운영: 2025. 8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.20.>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<신설 2015.1.20.>
-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<신설 2010.2.4., 2015.1.20., 2021.4.20.>
-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의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0.2.4., 2015.1.20., 2021.4.20., 2022.11.15.>
- ⑥~⑧ 생략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
-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- ③~④ 생략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-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<개정 2017.7.26.>
 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 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정도, 책임능력 등

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
3.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
② 생략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1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

① 출자·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② 생략

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

제4조(대상사무)

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② 생략

제7조(의회의 동의)

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9.4.12., 2023.2.3.>

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3.6.30.>